

방화 범죄의 특성과 예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aracteristics and Prevention of Arson

최 종 태

Choi, J. T.

대경대학 경찰행정학과
(2001. 04. 26 접수/2001. 05. 08 채택)

요 약

이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방화 범죄의 위험성에 관한 인지 및 관심도를 제고하고, 방화 범죄의 통제에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목적에 따라 방화 화재에 대한 대응을 주민 자율 방범체제의 강화를 통한 대응 방안과 공공기관의 방화범죄 통제에 의한 대응방안 그리고 방화범의 정신분 석적 치료에 의한 교정차원의 방안을 대안으로 각각 제시하였다. 또한 이 대안에 심근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경찰 및 소방활동을 통한 민·경 친선과 유관기관 상호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강조된다.

ABSTRACT

A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hance the concern and cognition of people and to search for the effective approach on the control of crime arson which is increasing recently. To accomplish this purpose, it is important to organize three other factors, such as enforcement and strengthening of residents self defense system about fire, establishment of more complicated arson control system of the public agency, and strengthening the correction activity of arson psychologically.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community police and fire police and to enforce the friendship between residents and public agency.

Keywords : Crime arson, Self defense system , Arson control system, Correction activity

1. 서 론

화재는 인위적 재난에 해당하는 재해이다. 화재에 있어 특히 방화(放火)로 인한 화재는 피해의 심각성¹⁾과 사회 공공의 안전 유지에 중대한 위험을 제기하는 반 사회적 범죄 행위로 규정되고 방화행위를 살인, 강도, 강간 등과 함께 강력범죄의 유형으로 취급, 관리하고 있다(검찰 통계 규정 및 검찰예규).

방화로 인한 화재는 수시로 발생하는 일반화재의 범주에 감추어져, 은닉성이 높고 감추어진 범죄적 특성이 있어 화재가 방화 화재로 원인이 판명되기까지는

인지하기 어렵고, 방화 범죄인의 체포를 위한 신속한 수사활동을 전개하는데 제약요인이 있으며, 일반 국민에 대한 방화 범죄의 사례홍보 활동에도 적시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최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평소 생활 주변에서 느끼는 화재에 관한 관심도는 높은편(60.9%)이나, 자기 가정 내에서 느끼는 화재 위험도 인지 및 관심도는 매우 저조(6.6%)한 편이다.²⁾

이러한 조사 결과는 시민이 범죄를 두려워하는 정도³⁾(50.3%)보다 화재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사회에 있어 범죄의 예방보다 방, 실화를

¹⁾2001년 3월 4일, 03:46경 발생한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주택화재는 그 원인이 건물 주인 아들이 그의 어머니와 심하게 다툰 후 격분한 나머지 안방에 불을 놓아 연소케하여 발화한 것으로 이 화재를 진압하면서 인명 구조차 옥내에 진입한 소방 공무원 9명중 6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방화 사건이 있었다.

²⁾행정 사치부의, 산불 예방 및 소방 안전 관련 국민의식 조사(오피 소사이어트) : 2001. 3. 7에서 인용한 것임.

³⁾최종태, 민간차원의 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2001, p. 1.

E-mail: jtchoi@tk.ac.kr

원인으로 하는 화재의 예방이 더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아울러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요즘 도심지역에서 화염병 투척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방화가 성행하고 있어 그 모방성이 매우 우려된다는 것이다. 방화로 인한 화재로 인하여 최근 3년간(1998. 1. 1~2001. 1. 3) 모두 8,641건이 발생하여 361명이 사망하고 84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60여억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는데 방화장소 별로는 ① 차량 ② 주택 ③ 아파트 순이다⁴⁾. 한편 방화 범죄 발생 추세를 다른 범죄와 비교해보면 전체 범죄 건수는 지난 30년간 약 5배 증가하였는데 방화 범죄의 증가율도 전체 범죄의 발생률과 같은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강력법에 있어 강도(6.7배), 강간(5.8배)의 다음가는 증가 추세라 하겠다.⁵⁾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시민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보다 화재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다는 것과 방화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의 자기생활 주변의 화재 예방을 위한 관심도 제고와 방화의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지역사회 주민과 경찰 및 소방 등 행정기관이 상호 동반자 관계에서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방화 관련 지역사회 문제 지향적 경찰 및 소방활동이라는 새로운 접근방안과 민간 차원의 동반자적 대응을 통하여 방화범죄를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이 연구는 문헌 및 방화 관련 자료 조사를 통한 기술적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며, 연구의 범위는 방화 화재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실태, 그리고 방화 화재의 대응방안으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민, 경 동반자적 차원의 대응방안과 경찰 및 소방차원의 지역사회 문제 지향적 접근 방안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2. 방화 범죄에 관한 이론적 논의

2.1 방화 범죄의 개념

방화 범죄는 일반적으로 고의와 악의(Willful and malicious)로 사람의 재물에 불을 놓는(Burning) 행위라고 하며,⁶⁾ 현행형법은 “방화의 죄”를 공공의 평온을 보호 법적으로 하는 공공 위험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화죄는 로마법에서는 살인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였고, 게르만 법에서도 생명과 재산에 관한 침해범으로 보았으며, 프로이센 형법에서도 공공 위험죄로 규정하였다.⁷⁾ 방화를 원인으로 하는 화재는 외국의 실태에서도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데, 미국의 경우 방화에 의한 사망률이 전체 화재로 인한 사망원인에서 세 번째를 차지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1999년도 전체 화재(58,534건)건수 중에서 방화에 의한 화재는(7,482건) 1.8%를 차지하여 화재 원인 중에서 세 번째라는 발화빈도를 나타내고 있다.⁸⁾ 이처럼 방화 화재는 그 원인이 방화 범인의 의도에 따라 목적물이 소훼되는 것이므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위협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매우 우려할 만한 반사회적 범죄이다. 방화에 의한 화재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아 방화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는 다른 범죄(강력범)에 비하여 일과성에 그치고 망각적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⁹⁾

2.2 방화화재의 특성

2.2.1 방화화재의 특수성

방화화재는 일반 화재사고에 은폐되어 초동 단계에서부터 방화가 화재의 원인임을 인지하기 어렵고, 화재감식 등 수사 활동결과 비로서 방화에 의한 화재로 판명이 된다. 그래서 사회일반의 초기 대응과 지속적 대응이 어렵고, 한편,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 활동상의 특수성¹⁰⁾으로 인하여 방화 범죄의 증거수집을 어렵게 하는 등의 특성이 있다. 또한 방화범은 단독범행이 많아 공범의 자백확보가 불가능하고, 범행수법이

⁴⁾행정자치부, 최근 3년간 방화현황, 소방국, 2001. 4.

⁵⁾법무연수원, “범죄 백서” (경기도 : 법무연수원), 1999, p. 52.

⁶⁾John D. Dehaan, KIRK'S Fire Investigation. Prentice-Hall, Inc. A Simon & schuyler company, 1991. p 323.

⁷⁾이태연, 형법각론, (서울 : 형설사), 197. pp. 432-433.

⁸⁾행정자치부, 20 화재통계연보. (서울 : 행정자치부), p.

⁹⁾최근 10년간 전체 화재는 2.1배로 연간 8.8%의 증가율(2000 : 34,844건)을 보이고 장소별로는 ① 주택 ② 차량 ③ 공장 ④ 음식점 ⑤ 점포의 순이다.

¹⁰⁾화재진압을 위한 소화 활동상의 특수성이란 일반적으로 화재현장에서 사용되는 소화 방법으로 냉각소화방법과 질식소화방법 그리고 제거(remove) 소화방법이 있는데 이들 중에 어느 것이든 화재 현자의 원형을 훼손하게 되어 “현장을 증거의 보고”라고 하는 현장 중심 수사 활동을 어렵게 한다.

야간에 은밀한 곳을 범행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발각이 어렵고, 모방성과 연쇄성이 강하여, 사회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방화범들은 방화 보조물로 인화성이 강한 위험물질을 사용하고 있어 연소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피해의 확산을 수반하는 등 일반화재와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방화범죄는 그 실행 용이성 때문에 정신박약자는 다른 범죄에서 보다 방화 범죄에서 더 많은 비율을 나타낸다.¹¹⁾ 방화로 인한 화재는 이와 같은 일반적 특성 때문에 위험성의 실제적 체감도가 저조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특성은 형사 정책적 방법론상의 문제라 할 수 있는 숨은 범죄(暗數)¹²⁾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표 1. 強力犯罪의 發生地域別 分布

區分	計	大都市	中·小都市	都市以外
殺人	966(100)	721(74.6)	95(9.8)	150(15.5)
強盜	5,407(100)	4,690(86.7)	385(7.1)	332(6.1)
強姦	6,016(100)	4,688(77.9)	545(9.1)	783(13.0)
性暴力	1,870(100)	1,494(79.9)	168(9.0)	208(11.1)
放火	1,157(100)	898(77.6)	91(7.9)	168(14.5)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경기도 : 법무연수원), 1999. p. 55.

표 2. 強力犯罪의 發生時間帶別 分布

區分 罪名	計	새벽	아침	午前	午後	저녁	밤	未詳
殺人	966(100)	72(7.5)	38(3.9)	94(9.7)	173(17.9)	73(7.6)	360(37.3)	156(16.1)
強盜	5,541(100)	579(10.4)	117(2.1)	390(7.0)	777(14.0)	202(3.6)	2,514(45.4)	962(17.4)
強姦	6,022(100)	495(8.2)	146(2.4)	407(6.8)	803(13.3)	296(4.9)	2,425(40.3)	1,450(24.1)
性暴力	1,870(100)	172(9.2)	75(4.0)	143(7.7)	322(17.2)	123(6.6)	646(34.5)	389(24.1)
放火	1,157(100)	119(10.3)	35(3.0)	140(12.1)	159(13.7)	88(7.6)	426(36.8)	190(16.4)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경기도 : 법무연수원), 1999. p. 56.

¹¹⁾방화범죄가 다른 범죄와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다른 범죄에 비해 그 실행이 용이한데 비해 그 피해가 커서 정신이 박약하거나 지능이 낮은 사람도 들켜거나 제지 받지않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원한을 해소하거나 희열감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2-3%와 일반 범죄자의 10%정도를 차지하는 정신박약자가 방화범죄에 있어서는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http://www.safekorea.net/webzine/contents/special/sp01-03-1-1.html>, 2001에서 인용).

¹²⁾숨은 범죄는 일반적으로 실제로 범죄가 발생 하였음에도 범죄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를 의미하는데, 이 숨은 범죄의 형사 정책적 중요성은 범죄자가 숨을 영역 차단하고, 범죄 통계의 정확성을 제기하고, 범죄 원인론에서 취급되는 요인이 부정확한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그리고 숨은 범죄의 발생원인을 범죄와 관련을 맺는 집단, 즉 피해자, 범죄자, 소추기관과 관련하여 고려가 가능한데 그것은 ① 발생한 모든 범죄가 다 인식되는 것은 아닌데 특히 피해자가 불특정하거나 간접적 피해자만 존재하는 경우에 더욱 두드러진다. ② 인식된 모든 범죄가 모두 수사기관에 알려지는 것은 아니고 50~70%정도만 신고된다. ③ 수사기관에 인지된 모든 사건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④ 검거된 사건은 모두 공소가 제기 되는 것은 아니며, ⑤ 공소된 모든 사건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는것도 아니다(배종대, 형사정책 제 3판, (서울 : 홍문사) pp. 49-52에서 인용한 것임).

¹³⁾법무연수원, 전제서, p. 60.

2.2.2 방화범죄의 특성

가. 방화범죄의 발생 지역별 특성

강력범죄 중 방화범죄의 발생 지역별 구성비는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① 대도시 지역이 77.6%, ② 도시 이외의 지역이 14.5%, ③ 중, 소도시 지역이 7.9%이다.

방화의 지역별 분포에 있어 대도시가 높은 것은 대도시의 인구 과밀에 따른 도시문제의 한가지 예로 당연하다 하겠으나 도시 이외의 지역이 중, 소도시지역 보다 높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나. 방화 범죄의 발생 시간대별 특성

표 2는 방화범죄의 발생 시간대별 특징을 나타낸 것인데, 밤 시간대에는 36.8%로 가장 높게 발생하고 다음이 오후(13.7%)와 오전(12.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특성은 살인, 강도, 강간 등 다른 강력범죄의 발생 다발 시간대가 대개 야간인 점과 유사성이 있는 것 같다.

2.2.3 방화범의 특성

가. 방화범의 연령별, 교육정도별 구성비

방화범의 연령별 구성비는 19세 이하가 75명(7.9%)이고 20세~30세가 178명(18.7%), 31세~40세가 375명(39.5%), 41세~50세가 185명(19.5%), 51세~60세가 66명(7.0%)이며 60세 이상이 19명(2.0%)이다.¹³⁾ 이런 연령적 분포에서 볼 때 30~40대가 가장 많이 나타나

표 3. 強力犯罪者 教育程度別 構成比

學歷 \ 罪名	殺人	強盜	強姦	性暴力	放火
計 15,737	1,014(100)	8,100(100)	5,674(100)	229(100)	949(100)
初等學校以下	243(24.0)	504(6.2)	721(12.7)	30(13.1)	249(26.2)
中學校	207(20.4)	1,911(23.6)	1,013(17.8)	45(19.6)	222(23.4)
高等學校	315(31.1)	3,806(47.0)	2,303(40.6)	111(48.5)	308(32.5)
大學校 以上	84(8.3)	493(6.1)	815(14.4)	19(8.3)	64(6.7)
未詳	165(16.3)	1,368(17.1)	822(14.5)	24(10.5)	106(11.2)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선, (경기도 : 법무연수원), 1999, p. 61.

고 있는데 이들 연령층은 그들의 사회적 활동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나. 방화범의 교육정도별 구성비

방화범의 교육정도는 초등학교 이하가 249명(26.2%)이고, 중학교 졸업정도가 222명(23.4%), 고등학교가 308명(32.5%), 대학교 이상이 64명(6.7%), 미상이 106명(11.2%)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등학교 졸업정도의 학력자가 가장 구성비가 높다.¹⁴⁾

이것은 다른 강력범죄에 있어서도 고등학교 졸업정도의 학력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2.3 방화 범죄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방화 범죄에 관한 선행연구는 ① 방화 범죄에 대한 연구 ② 방화 범죄자에 대한 연구 ③ 방화 범죄의 통제에 관한 연구¹⁵⁾에 따라 검토할 것이다.

2.3.1 방화 범죄에 대한 연구

방화 범죄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에 이르러 호주 등 유럽제국에서 방화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Patrick J. Riopelle(1978)은 미국의 방화 범죄에 의한 피해상황을 근거로 방화 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하였다. 이에 따라 FBI가 지정한 지표 범죄중 피해가 가장 큰 범죄로 방화범죄를 지적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은 방화 화재에 대한 책임을 소방기관에 완전히 전가하였으므로 범죄 수사에 혼란되지 않은 소

방관들만으로는 방화범에 대응력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방화 수사 요원의 확보에 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며 경찰과 소방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¹⁶⁾

P. Andersun(1983)은 호주에서도 방화 범죄가 크게 증가하여 사회적·경제적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그는 방화 화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관련기관(또는 관련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대처하는 것인데 여기서 필요로 하는 행동영역으로는 ① 지역 사회 공공체에 대한 방화 화재의 인지 및 관심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② 방화범 수사기술의 향상과 예방책 마련을 강조하였다.¹⁷⁾

2.3.2 방화 범죄자에 대한 연구

방화로 인한 화재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다. 우리 한국도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방화 화재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방화 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방화 범죄인에 대한 범죄 심리학적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방화 범죄의 대응은 먼저 방화의 우려있는 사람을 찾아내어 제지함으로써 예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Inciardi(1970)는 성인방화범 138명을 상대로 연구한 결과(동기별, 유형화하여) 58%가 복수(revenge)가 방화의 동기였고 18%가 흥분(excitement)과 범죄논(7%) 및 사기(4%) 그리고 반달리즘(Vandalism)에 의한 방화였다는 것이다.¹⁸⁾

¹⁴⁾법무연수원, 전제서, p. 61.

¹⁵⁾한국형사정책 연구원, 방화 범죄에 대한 연구, (서울 : 형사정책연구원), 1993, pp. 16-26.

¹⁶⁾Patrick J. Riopelle, "Special Report : The Growing Problem of Arson", Wisconsin Council on Criminal Justice Program Evaluation Section, 1978, pp. 2-10.

¹⁷⁾P. Anderson, "Arson", in C.R. Bevan(ed), 「National conference on Arson」,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1983, pp. 31-34.

¹⁸⁾Inciardi, J., "The Adult Fire Setter : A Typology", Criminology, Vol. 8, pp. 146-151.

Bradford(1982)는 방화범에 대한 정신의학적 진단 결과 정신지체 및 비정상적 뇌파, 인성해제(Personality Disorder)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적 지위가 낮고, 학력수준도 비교적 낮다는 것이다라고 한다. 또한 방화 범인들은 결혼 가정에서 양육되는 비율이 높은 등, 인성, 가족관계, 직업, 교육, 기타 사회적 배경요인이 불리한 입장에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⁹⁾

Bradford는 방화 범죄자들의 범행 동기를 8개 집단으로 분류하고 ① 우연적인(Accidental)방화 ② 정신 이상에 의한 방화 ③ 복수를 위한 방화 ④ 성적 만족에 의한 방화 ⑤ 관심 끌기 및 도움 요청을 위한 방화 ⑥ 전문적인 방화 ⑦ 어린이들에 의한 방화 ⑧ 혼합형 등이다. 이러한 유형의 분류는 방화범인의 정신 분석학적 분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방화 범죄에 대한 분류에 있어 사람이 성장에 따라 발달 단계가 변화한다는 프로이드의 성적에너지 이론에 근거한 성심리학적 발달 단계를 분류하기도 한다.²⁰⁾

2.3.3 방화 범죄의 통제에 관한 연구

John T. Surcht(1976)는 9개 영역에 걸쳐 방화 범죄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① 방화 문제와 관련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 ② 범죄보고 체계에 방화범죄의 재분류하여 주요 범죄로 반영할 것 ③ 방화 범죄의 결과 및 대응 필요성을 공공에게 알릴 것 ④ 관련자에게 필요한 훈련 Program 적용 ⑤ 방화범에 대한 정보의 공유 ⑥ 효과적인 범집행 ⑦ 방화범죄 대응에 적절한 자금원 확보 ⑧ 방화 범죄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 조사 및 수사기술 개발 ⑨ 미국 내에서 전 분야에 걸친 방화 유형의 일관화 등이다. 이 제안의 결과 소방학교(The national Fire Academy)에 방화범 검거 및 수사 과정이 개설되었고, 화재 정보센터에는 방화 정보센터(Arson Information center)가 설립되었으며, F.B.I의 Uniform Crime Report에서 방화 범죄를 제 1종 범죄(Part 1 Crime)로 분류하였다. Clifford L.

Karchmer(1983)는 방화 범죄의 경우 “누가 범죄를 저지르는가”하는 문제 보다는 “어떤 지역이 방화범의 목표 지역이 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고 하면서 방화 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통하여 방화범의 목표가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²¹⁾

일본의 방화 화재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는 1986년 동경소방청에 “방화 화재 예방대책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방화 화재 예방의 전략적 분야를 ① 도시계획과 건축 환경적 측면 ② 사회 심리적·청소년 등의 교육적인 측면 ③ 법적, 행정제도 방화대상 그리고 방화사례를 분석하여 예방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2.3.4 방화의 동기에 관한 이론

방화의 동기에겐 일반적으로 ① 악회(Vandalism) ② 방화광(Pyromaniac) ③ 이익사취목적방화(Arson-forprofit) ④ 다른 범죄언행을 위한 방화(Concealment of Another Crime) ⑤ 보복 또는 원한(Revenge spite)등으로 나누기도 하고,²²⁾ 사회적 저항이나 테러목적방화(Social protest/Terrorism)도 들고 있다.²³⁾ 방화범은 그들의 방화 동기에 따라 특성이 다를 수 있겠으나 인격적 특성은 주로 이상 성격이나 이상심리에 원인을 두기도 한다.

이 경우는 방화범의 행위가 병적이기도 하고 분노와 복수 등 심적 복합체의 결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성격유형으로는 무력형에 속하고, 소심적, 내성적, 정신병질로서 감정이 발산되지 못한채로 축적하였다가 강한 열정상태, 편집상태, 정신쇄약상태로 되고 이러한 성격적 영향으로 방화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²⁴⁾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적 범외관에서 인간은 본래 공격적, 파괴적 및 반사회적 충동이나 본능을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의 층으로 생각하고 특히 무의식의 과정에서 충동, 걱정, 억압된 감정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프로이드는 인격구조와 성적에너지²⁵⁾를 중시한다. 특히 성적

¹⁹⁾J. W. Bradford, “Arson : A Review”, in Mark H. Ben - Aron(ed.), 「Clinical Criminology : The Assessment and treatment of Criminal Behavior」, University of toronto clark institute of psychiatry, 1985, pp. 98.

²⁰⁾표창원, (<http://www.safekorea.net/webzine/contents/special/sp01-03-3-2.html>).

²¹⁾Clifford L. Karchmer, “Prevention Arson Epidemic : The Role of Early warning strategies”, Battle Memorial Institute Law and Justice Study Center, 1983, pp. 2-3.

²²⁾D. L. Rosenbaur, The Arson Epidemic (Book one), NFPA 1981. pp. 8-13.

²³⁾John D. Dehagn, *ibid*, pp. 324-331.

²⁴⁾이상현, 범죄심리학, (서울 : 박영사), 1999, pp. 335-337에서 인용.

²⁵⁾프로이드의 인격구조론은 원본능(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의 3개 체계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원본능(id)은 가장 원초적인 본능적 쾌락원칙으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동물적인 쾌락추구 단계이고, 자아(ego)는 현실원리에 따르기 위해 긴장해소를 유보하고 욕구충족을 위한 계획을 세우며 행동을 검토하게 된다. 초자아(Superego)단계에서는 인간의 도덕성, 이상, 양심, 윤리성, 규범행동과 관련되는 정신기능이다. 초자아는 성격의 도덕적 무기이며, 쾌락보다 완벽을 추구한다.

에너키에 있어서는 사람의 성장에 따라서 구순기, 향문기, 남근기의 순으로 “리비도”가 옮겨가는데 이것이 고착되었을 때 행동이나 인격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2.4 범죄 예방에 관한 새로운 경향

최근에 이르러 범죄통제의 새로운 경향은 범죄 발생 이전에 범죄예방을 통한 범죄문제 해결의 중용성에 따라 범죄예방이 형사정책의 지도이념으로서 새로운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인데 방화 범죄의 예방에 있어서도 같은 차원에서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²⁶⁾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이란 지역사회 자체의 범죄예방 능력으로서, 비공식 통제 능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범죄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종합적인 활동으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이웃감시(이웃집 봐주기)활동이다. 이것을 통하여 ① 범죄 및 화재의 예방과 두려움 감소 ② 지역사회 관계개선 등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 현재 지역사회 관련 프로그램은 ① 시민 순찰활동 ②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및 화재의 예방활동 ③ 민간경비업체를 통한 범죄 및 화재 예방활동 ④ 언론매체를 통한 예방 홍보와 범죄 및 화재 신고 프로그램을 생각할 수 있다. 지역사회 경찰 및 소방 활동은 범죄통제의 방법이 범법자의 검거·처벌이라는 전통적 경찰활동에서 범죄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새로운 개념의 정립과 함께 등장한 경찰활동으로 범죄예방에 초점을 둘 필요성에 따라 인식하게 된 것이다. 경찰이 추구하는 목적은 범죄인의 검거보다 주민의 안전확보와 주민의 자율적 범죄 대응력으로 가능하게 하려는데 있다.

그러므로 주민에 대하여 ① 대민 봉사와 문제의 소

재과약과 해결에 주민동참 유도 ② 주민에 대한 책임성 증시와 시민간의 상호신뢰와 존경에 기초한 새로운 관계구축으로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임무 수행 ③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참여 및 권한의 분산화를 통하여 경찰 및 소방기관은 지역사회 안전과 평온의 유지라는 임무수행의 구성체에 불과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 주체는 주민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찰 및 소방 활동은 미·일에서도 이미 도입하고 있고 우리 경찰도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이런 새로운 경향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아직은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방화범의 현황 및 문제점

3.1 방화 화재의 발생추이

지난 5년간(1994-1998) 발생한 방화 화재는 표 3에서 처럼 연평균 14%씩 증가하였다.

이것은 전체 화재가 연평균 12% 증가하는 것보다 더 높은 발생추이를 보이고 있다. 방화 화재는 피해면에 있어서도 표 4와 같이 인명피해에 있어서는 사망자가 연평균 4.5%씩 증가하였고, 부상자는 9.3%씩 증가

표 4. 방화 화재의 연도별 피해상황

구분	'94	'95	'96	'97	'98	증가율 (%)
건수	1,824	2,245	2,577	2,655	3,056	14.0
사망	105	156	127	116	112	4.5
부상	208	271	259	259	288	9.3
재산피해 (백만원)	4,952	6,241	5,905	7,306	9,272	17.8

자료 : 행정자치부, 화재통계연보(소방국), 1999, p. 64.

표 3. 방화 화재의 발생상황 비교

연도별 구분	94	95	96	97	98	연평균증가율 (%)
총 화재	22,043	26,071	22,665	29,472	32,644	12%
방화화재	1,824	2,245	2,577	2,655	3,056	14.0%

자료 : 행정자치부, 화재통계연보(소방국), 1999, p. 42와 p. 64에서 재작성한 것임.

프로이드의 성적에너키(리비도)는 구순기(유아기)는 구수가학적 성격이 나타나고, 향문기(8개월에서 3-4세)에는 반항심과 적개심에 의한 반항과 파괴를 의미하고, 향문기에는 이것이 잘못 고착되면 성격이 파괴적이고 잔인하며, 강박적이게 된다. 남근기(3-6세)는 오디프스 콤플렉스라고도 하는데 동성인 부모에게 강한 성적 감정을 보이며 질투나 적의를 보인다. 그러므로 어린이는 이것이 나쁘기 때문에 거세되지 않을까 하는 “거세불안”을 느끼게 된다(이상현, 범죄심리학, 박영사, 1999, pp. 64-68).

²⁶⁾경찰대학, 경찰방법론, 경찰대학 교재편찬위원회, 1999, p. 40-50.

표 5. 방화 화재의 발생동기

구분	'94	'95	'96	'97	'98	증가율 (%)
계	1,824	2,245	2,577	2,655	3,056	14.0
가정불화	409	457	421	421	457	3.2
비관자살	173	241	212	226	96	-5.9
정신이상	70	116	156	176	111	19.0
싸움	191	224	211	121	116	-8.8
주벽	110	124	112	132	159	10.3
기타	871	1,083	1,474	1,589	2,117	25.4

자료 : 행정자치부, '98 화재통계연보 (서울 : 소방국), 1999, p. 65.

하였으며 재산 피해에 있어서도 17.8%씩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방화 화재로 인한 피해 및 발생동기는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가정불화, 비관자살, 정신이상, 싸움, 주벽, 기타의 순으로 집계되었는데 이것들은 정신 심리학적 범죄관의 입장에서 발생하는 동기라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방화 화재는 전체화재로 인한 피해상황보다 인명피해에 심각한 위협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미국이나 호주 등의 주요 외국에서도 같은 현상이라 하겠다.²⁷⁾ 방화 범죄를 다른 범죄와 비교하면 표 6과 같이 살인은 지난 30년간 그 발생률이 비슷하거나 소폭의 증가세로 보이고 있으며, 강도, 강간, 방화는 3~6배 증가하였다. 이를 나누어 보면 강도는 약 5.8배 증가하였으며, 이에 비하여 방화는 약 5배 증가하였다. 즉 4대 강력범죄 가운데 방화의 증가율은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⁸⁾

표 6. 強力犯罪 罪名別 發生現況(1969년~1998년)

區分 年度	合計	570 殺人	強盜	強姦	性暴力	放火
1969	2,974	570	805	1,369	-	230
1970	3,430	570	929	1,659	-	272
1989	10,412	578	4,085	5,102	-	647
1990	11,440	666	4,195	5,519	-	1,060
1991	9,619	630	2,766	6,175	-	1,048
1992	9,675	615	2,549	5,447	-	1,064
1993	11,639	806	2,876	7,051	-	906
1994	13,304	705	4,469	6,169	1,246	715
1995	10,852	646	3,414	4,912	1,262	618
1996	12,155	690	3,586	5,688	1,470	721
1997	12,967	789	4,282	5,665	1,455	776
1998	15,416	966	5,407	6,013	1,870	1,157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경기도 : 법무연수원), 1999, p. 52에서 재작성.

3.2 방화범죄의 유형별 분류

방화 범죄의 동기별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²⁹⁾

3.2.1 방화의 일반적 동기와 사례

가. 증오/분노/보복 목적의 방화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인관계의 불안정과 갈등관계가 동기가 되어 방화를 하게된다. 이 유형의 방화범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때로는 부특정 다수인을 범행목표로 삼는 경우가 있다.

방화범의 복수의 주요동기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 ① 개인적 복수, ② 사회에 대한 복수, ③ 제도나 기관에 대한 복수, ④ 집단에 대한 복수가 그것이다.³⁰⁾

²⁷⁾미국의 경우 방화로 인한 화재는 증가 추세에 있는데 FBI의 표준 범죄 보고서(UCR : Uniform crime Reports)에 의하면 미국에서 한해동안 방화로 인하여 1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방화의 대량 살상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다. 미국에서 1945년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 중 총기를 이용한 경우는 22명을 살해한 것이 최고기록이지만 1990년 뉴욕의 한 나이트클럽에 대한 방화는 89명을 사망케하였다. 호주 뉴사우스웨임즈 지방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중 방화 또는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1987년에는 13%이던 것이 1994년에는 40%가 증가하였으며, 이런 추세는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http://www.safekorea.net/webzine/contents/special/sp03-01-1.html>에서 인용 요약).

²⁸⁾법무연수원, 범죄백서, (경기도 : 법무연수원), 1999, pp. 49-54.

²⁹⁾Charles P. Nemeth, Private Security and the investigative process, second E.d.,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college at Brokport, New York, 1999, pp. 262-263.

³⁰⁾개인적 복수는 불을 사용하여 개인적인 감정을 해소하려고 방화하는 것, 이 1대 1의 복수를 1회적으로 유발시키는 요인으로는 인쟁, 싸움, 개인적 감정, 또는 복수심을 자극하는 극도의 감정적 상처 등을 들 수 있다. 이 경우에 선호되는 방화 대상으로는 피해자의 자동차나 집, 또는 개인적 소유물을 들 수 있다. 사회에 대한 복수는 복수에 의한 방화 가운데 가장 위험한 형태. 자신이 사회로부터 배반당했다고 느낌으로서 일으키는 방화, 일반적으로 인생 전반에 있어 부적응, 외로움, 고립감, 또는 학대 받았다는 느낌으로 괴로워하며 자신을 나쁘게만 보는 사회에 대한 반항행위로 불을 지른다. 또한 외모나 건강 때문에 부당하게 대우 받았다고 괴로워 할 수도 있다. 범행대상은 불특정하며 방화행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도 한다. 이에 관련된 모든 방화범들은 심각한 상태라고 보여진다.

<사 례>

199. 4. 16. 11:59경 부산시 서구○○동 ○○번지 소재 ○○○ 법률사무소에서 방화자 ○○○는 그의 동생이 1심에서 폭력행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된데 대한 분풀이로 바닥에 신나를 뿌리고 방화하여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였다.

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방화

이 유형의 방화는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로서 보험이 가입된 주택이나, 건물, 상품 또는 차량 등에 방화하는 경우로서 이런 대상은 주로 자기의 관리하에 있는 재물들이다.

<사 례>

회사대표 ○○○와 공장장 ○○○는 ① 1995년 3월 대전시 대덕구 ○○○동에 섬유회사를 설립한 후 K해상보험에 3억원짜리 화재 보험에 가입한 후 1996. 4. 29. 16:00경 공장 건물에 방화하여 2억5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사취하였고, ② 1995년 3월에도 인천 ○○ 산업인 자기 소유 회사건물에 방화한 후 J화재 보험으로부터 2억 4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사취하였다.³¹⁾

다. 범죄언니 목적 방화

다른 범죄를 범한 후 그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할 의도로 방화하는 유형이 여기에 속하는데 그 방화 대상은 주로 범행장소인 건물이나 사무실, 서류, 장부 등이다. 이 유형의 방화 범죄의 특성은 변사체, 중요금품, 중요서류, 장부 등을 소훼하는 행위이다.

라. 악희 목적 방화(Vandalism)

악희 목적 방화는 문명사회에 대한 반작용적 심리로 서 손괴행위 등과 함께 재물에 무차별 방화하여 소훼

하고 만족감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방화는 미국에서는 매우 빈번히 발생하며 주로 청소년에 의하여 범행이 자행된다. 우리 한국에서도 최근에 와서 증가하고 있는 차량 또는 건축물의 연쇄방화, 농화 등은 이런 유형의 방화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마. 방화 자살

방화를 자살의 수단으로 하는 유형으로, 비관자살의 경우도 있지만 사회적 저항 또는 격분에 대한 항의의 방법으로 방화 자살하는 유형이다.

<사 례>

1999. 7. 13. 03:17분경 부산시 해운대구 ○○동 ○○번지 매집장내 차량에서 가정불화로 이혼 후 자녀 2명이 승차한 상태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하였는데 이 사고로 방화자를 포함하여 3명이 사망하였다.

바. 방화광 또는 방화증(Pyromaniac)에 의한 방화

방화광에 의한 방화는 실질적인 원인이나 물질적 이익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스릴, 쾌감, 등 불을 지르고 싶다는 것과 방화로 인한 감정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방화하는 경우이다.

방화광은 정신결함적 방화 범죄자로서 이상성격자나 정신이상자, 정신박약자, 정신병질자 등으로 심리학적 치료책을 필요로 한다.³²⁾

사. 폭력/테러리즘에 의한 방화

이상에서 열거한 방화의 동기 이외에 폭력 또는 테러리즘에 의한 방화가 있다. 이것은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이나 사업경쟁상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의 목적을 비합법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폭력시위용이나 테러형태로 방화하는 유형이다. 최근에

제도나 기관에 대한 복수는 정부나 교육기관, 군사기관, 의료기관이나 종교단체 기타의 전반적인 조직에 대한 불만으로 방화를 함. 대개 연쇄 방화범이 되면 복수의 대상인 특정조직에 대하여 연속적인 방화를 저지르게 된다. 단체의 건물은 가장 자주 그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다.

집단에 대한 복수는 사회단체, 인종단체, 종교단체, 우애를 기초로 하는 집단이나 노동조합 또는 다른 집단이 된다. 대상은 특정한 개인보다는 집단 자체나 교회, 모임장소, 또는 집단의 상징이 되는 조형물 등이 대표적이다. 연쇄방화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http://www.safekorea.net/webzine/contents/special/sp01-03-2html>에서 인용한 것임.).

³¹⁾중앙일보, “전국을 돌며 공장을 설립한 뒤 불을 지르고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일당 3명이 검찰에 적발되었다.” 제하의 기사, 1996. 10. 23. 23면.

³²⁾방화광은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느끼는 증상을 나타내는 자가 저지르는 방화로 경찰 등 공식기관들은 실제 방화광이 존재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방화증은 지난 40년간 미국의 정신분석 연구기관들이 기준으로 사용해 온 DSM-II(Diagnostic statistical Manual-II : 미국 정신의학협회가 발간하는 정신이상자들의 분류에 관한 교범 2차 개정판)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정신의학 전문가에 의해 규정되었다는 이유로 방화원인으로부터 방화광을 제외시키려는 방화 범죄 연구가들의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방화광이 용어는 아직도 애매한 상태에 있으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만일 어떤 사람이 방화벽이 있다면 그는 매우 드문 인간형이라는 사실이다(<http://www.safekorea.net/webzine/contents/special/sp01-03-1html>에서 인용함.).

와서는 화염병시위³³⁾가 급증하고 있는데, 도심지의 건물 및 기타 재물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화염병 투척행위는 여기에 해당하는 방화라 할 수 있다.

3.2.2. 방화범의 정신 분석학적 동기

방화범의 정신 분석학적 분류는 프로이드의 성심리학적 분류에 의하면 ① 구강기 방화범(Oral-stage firesetting) ② 항문기 방화범(Anal-stage firesetting) ③ 남근기 방화범(Latency-period firesetting) ④ 잠복기 방화범 ⑤ 외음부기 방화범으로 나누고 있다.³⁴⁾

가. 구강기 방화범(Oral-stage firesetting)

프로이드의 성적에너지에 따르면 구강기에 머무르고 있는 방화범들이 무위식 속에서 화염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따뜻한 안정감을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생후 18개월 동안 모성애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구강기에 고착된 방화범들은 방화의 충동을 느끼고 불을 보고 희열을 느끼게 된다.

<사 례>

13살난 소년 동철(가명)이의 엄마는 걱정적이고 쾌락을 즐기며 때로 끓는 열정 때문에 자기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놀아야 한다고 한다. 아이에 대해서는 완전히 내버려두다가 지나칠 정도로 애정표현을 하는 등 양극단을 달러왔다. 동철이는 어두운 곳에 혼자 있기를 두려워해서 밤에는 엄마와 함께 잔다. 동철이는 4살 때부터 지하실에 불을 놓기 시작했으며 점차 차마, 침대 등으로 방화 대상이 바뀌어 갔다. 후에 방화범으로 검거되어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경계선상의 정신 이상자(borderline psychotic)'판정 받았다.

나. 항문기 방화범(Anal-stage firesetting)

항문기 방화범들의 특징은 충동성과 격정성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감정의 반응으로 특정한 소유의 재물

에 방화하는데 동기는 분노, 복수, 미움이나 질투 등이다. 항문기의 방화범들은 때로는 감정의 폭발적 반응이나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사 례>

4살배기 쫄(가명)은 심하게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는데 어린 동생의 손가락을 분투 새에 끼어 다치게 하고 손가락을 면도칼로 자른 후 머리카락에 불을 붙였다. 쫄은 평소 과격하고 화가 나면 자기 머리를 벽에 부딪히곤 했다. 쫄의 어머니는 평소 불성실한 사람으로 실신을 잘하고 가끔 실어증 증세를 보였으며 심한 두통에 시달렸으며 무책임하고 가정을 소홀히 하는 남편과 자주 다투었다.

다. 남근기 방화범(Phallic-stage firesetting)

남근기 방화범의 특징은 불을 바라보면서 성적충동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거나 불을 놓음으로서 쾌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여성의 소유물에 직접 불을 붙이는 경향이 있으며, 불을 붙일 때 강한 충동을 느낀다고 한다.

<사 례>

56세 된 아동성호성도착증 동성연애자 김씨(가명)는 돈으로 사춘기 이전 아동들을 유혹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면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곤 했고 그렇게 불을 지르고 나면 발기가 되었다. 그러던 김씨는 불길을 바라보면서 유혹하려던 소년의 얼굴을 떠올리며 자위행위를 했다. 김씨는 한번도 성인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 본 적이 없다.

라. 잠복기 방화범(Latency-period firesetting)

잠복기 방화범들의 특징은 후회하는 일이 없다는 것과 방화 행동을 경험이나 처벌을 통하여 학습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방화범 중에 가장 무서운 부류에 속하는데, 혼란, 흥분, 무질서 등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차별적으로 방화한다.

³³⁾화염병 시위는 화염병을 투척함으로써 연변에 있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시위현장 주변의 건물, 집포나 동해중인 차량 기타 주·정차중인 차량 등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이 소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방화행위에 해당 할 것이며, 진압경찰을 상대로 한 투척행위다 하더라도 공부 수행중인 경찰관의 생명과 신체 및 공부수행경찰장비 및 차량을 대상으로 함으로 폭력적, 테러리즘의 유형에 해당하는 방화라고 규정할 수 있다. 더욱이 경찰이 선보인(인터넷에 뜬 제조법에 따라) 공중폭발 화염병은 그 폭발력 및 위험적인 화염과 파편은 인명 살상용인에 틀림없는 위험물질이라 보여진다. 화염병 시위는 15건으로 2000년에 들어와서는 지난 3년간의 시위건수에 육박하는 1672개를 사용했다는바 이런 결과로 불안을 느끼는 편은 시민이며 이로 인하여 공교의 안녕과 질서는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조선일보 2001. 4. 2. P. 31 "다시 도심서 난무하는 화염병"과 2001. 1. 4. 5자 사설 "화염병은 방화범이다" 제하의 기사참조).

³⁴⁾표창원, <http://www.safekorea.net>, 전계논문 "성심리학적 발달단계에 따른 분류"에서 요약 인용한 것임.

<사 례>

10살 난 회동(가명)이가 동네 창고 옆에 쌓아 둔 짚더미에 불을 놓아 큰 화재가 났는데 회동이는 부레 대한 환상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잡힌 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감정의 동요 없이 담담하게 진술하였다. 회동이의 학교에 문의해 보니 회동이는 '주의가 매우 산만하고 수업시간에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돌아다니고, 성격이 극도로 불량하고, 매우 변덕스럽고 쾌활과 우울의 양극단을 달리는' 이상성격의 소유자로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 요주의 대상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회동이 어머니는 아들에 대해 '삶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즐길 줄 아는' 생기 발랄한 소년이라고 열정적으로 칭송하였다.

마. 외음부기 방화범(Genital-stage firesetting)

외음부기 방화범은 불을 붙인 다음 진화 노력을 하기도 하고 소방관들을 돕는다는 흥분감을 느끼기 위해 방화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방관 직업을 희망하지만 지적, 신체적 능력 결함으로 소방관이 되지 못하고 대개는 의용 소방대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소방 교육을 받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Huff : 1994).

<사 례>

17세 된 이군은 두 달 새에 26군데에 연쇄 방화한 혐의로 붙잡혔다. 조사결과 이군은 불을 놓고 나서 화재경보기를 누른 후 현장에서 기다리다가 소방대기도 착해서 불을 끄는 광경을 지켜보다가 소방관들을 도와 주기도 했고 화재진압 도중에 소방대장을 찾아가 커피를 권하며 화재진압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어 소방대장과 매우 친해져 있었다.

또한 이군은 방화할 때마다 안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번 확인하고 불을 놓았기 때문에 이군의 방화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다친 적은 없었다. 이군의 가정과 성장과정에 대해 알아보니 이군이 6살 때 부모가 별거해서 고아원에 남겨졌으며 13살 때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 고아원을 떠났는데 이군의 아버지 이씨는 폐차를 불에 태우고 분해하는 폐차장에서 일하며 기거하고 있었다.

이 때부터 이군은 차를 불로 태우는 작업과정을 지켜보았는데 뒤에 한 진술에 의하면 차에 불을 붙이는

작업을 직접 하게 되었고 그 해에 부모는 정식으로 이혼하게 된다. 이혼 과정에서 어머니는 주말마다 이군을 보길 원했으나 이군은 '여자'를 싫어했기 때문에 어머니와 있는 것이 무척 불편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이군의 방화행각이 시작되었는데 처음에 길가에 서 있는 차에 불을 붙이다가 차고 안에 주차된 차에 불을 지르고 점차 차고와 창고, 빈집으로 방화대상이 확대되어갔다.

3.3 방화 범죄의 문제점

3.3.1 방화 범죄의 증가 추이와 예방정책미흡

우리 한국에서의 방화로 인한 화재는 지난 5년동안 연평균 14.0%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총 화재의 증가율인 12%보다 더 높게 발생하고 있다.

방화 범죄를 다른 범죄(강력범죄)의 발생률과 비교하면 지난 30년간 ① 강도(16.7배 증가) ② 강간(5.8배 증가) ③ 방화(5배 증가) ④ 살인의 순으로 발생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방화 범죄로 인한 사망자 발생률은 지난 5년간 연평균 4.5%씩 증가하여 총 화재의 사망자 발생률 감소(-2.5%)현상에 비하면 큰 차이를 나타낸다.

이런 방화 범죄의 추이는 방화 범죄의 동기를 주로 방화범의 개인적 인성적 결함으로 보아온 경향이 있어 방화 범죄 퇴치에 관한 일반적 관심이 저조한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방화범에 대한 과학적인 대처 등 예방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과 특히 정신 이상에 의한 방화가 다른 방화 동기와 비교할 때 가장 높게 발생(19.0%)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 같다. 또한 방화 범죄자의 재범방지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³⁵⁾

3.3.2 방화 범죄로 인한 피해 심각성

방화를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대부분 연소 보조물로 위험물질을 사용함으로 전체 화재에 비하여 연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연소가스등 매연이 다량 이동하게 되어 치사율이 매우 높다.

방화 화재로 인한 치사율의 발생 상황율을 전체 화재와 비교하면 지난 5년동안(94-98) 전체 화재는 100건당 2.1명의 치사율이 발생하는데 비하여 방화를 원인으로 하는 화재에서는 5.2명의 치사율을 보여 방화 화재가 전체 화재에 비하여 2.5배 정도 더 치사율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방화 화재는 최근들어 다른 범죄를 은닉하거나

³⁵⁾방화 범죄인의 전과 회수 구성비에 의하면 초범자가 29.4%, 1범과 2범이 28.2%, 3범이 8.3%, 4범이 27.1%로 대부분 전과자의 재범에 의해 범행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999. p. 62에서 인용).

³⁶⁾지난 3년간(98. 1. 1-2001. 3. 31)발생한 방화 화재는 8,641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361명이 사망하고 840명이 부상하였으며, 26,160,239천원의 재산피해를 야기했다(행정자치부, 소방국 자료에 의함).

가스유출 방화 및 위험물 사용방화 등 그 수법이 날로 흉포화 해짐에 따라 치사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동안(98-2000)에만 해도 8,641건의 방화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361명의 사망자와 84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화재 100건당 4.2명의 치사율과 9.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이다.³⁶⁾

3.3.3 방화 범죄에 관한 통계관리 부적정

화재의 원인과 피해 재산액 등을 조사하고 통계관리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장래에 발생할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방화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의 실태 파악의 정확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활용된 통계는 법무연수원 발행 “범죄백서”와 경찰청 발행 “경찰백서”와 행정자치부(소방국)에서 발간된 “화재 통계 연보”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자료들이 서로 불일치 한다는 것이다.³⁷⁾

또한 이러한 통계 자료에는 “기타”나 미상에 해당하는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계 자료를 근거로 범죄 상황을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본다. 통계상에 개입된 암수상의 문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3.4 전문연구 및 조사활동의 미흡

방화 화재에 대응하는 전문 연구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과학적 연구가 미흡하여 방화 범죄 대책 마련이 기초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 관심도마저 미미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방화광 등 개인적, 인성적 원인에 의한 방화 범죄인에 대한 예방과 치료차원의 연구와 교정 정책을 특기할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및 한국화재보험협회와 같은 일부기관, 단체 등에서 초보적인 연구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또한 방화 화재를 조사할 전담조사 활동의 미흡을 지적할 수 있다. 방화 범죄인은 초범보다 대부분 전과자이므로 방화범인의 필검체제가 방화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연쇄방화의 경우에는 더욱 범인의 체포가 중요하다.

방화범의 신속한 검거는 적어도 연쇄방화 등 동일범에 의한 방화범죄를 제지할 수 있다. 우리 한국의 경우 일선 경찰 기관에는 수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방화 범죄 전담 수사반을 운영하지 못하여 화재 현장에서 방, 실화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초동 수사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등 수사상의 문제도 제기되어 범죄인의 필검체제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3.3.5 경찰, 소방 등의 지역사회 활동 미흡

방화 화재의 예방은 경찰 및 소방 등의 담당 행정기관과 지역사회 주민 등 민간 차원의 예방활동 및 협력이 중요할 것이며 이것은 범죄 예방의 새로운 경향으로서 문제 지향적 경찰 활동(P. O. P : Problem Oriented Police)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방화 화재 예방을 위한 방안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는 관련 행정기관과 지역 주민간에 상호 관심과 이해를 통하여 동반자적 지위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 경찰 조직에서는 “경찰개혁”을 통하여 민·경천선의 협력체제 추구를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 경찰 활동을 통한 민경간의 개선이 엿보이고 있으나 범죄 예방을 위한 민간 차원의 활동은 아직 형식적인 단계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4. 방화 화재의 예방을 위한 대안

4.1 방화 화재 대응을 위한 외국의 사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방화 범죄 및 방화 범죄인의 통계상 인지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방화 화재의 예방을 강구는 데는 먼저 외국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미국의 대응사례

미국사회에서는 방화를 일종의 유행병(Epidemic)이며 전체지역사회에도 전하는 폭력(Violece)이라고 규정하였다.³⁸⁾ 이에 사회공동 대응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보험사와 다른 단체에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특히 여러 시와 주에서 설치한 기동합동연구반(The arson task forces)의 활동을 통한 전국적으로 방화 화재의 예방노력이 시도되었다.³⁹⁾

방화화재조사에는 소방서, 경찰서, 보험회사,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방화화재조사에는 보통 다음의 3가지 기본적인 접근방법이 있다. 그것은 ① 소방서의 책임형식, ② 경찰서의 책임형식, ③ 공동책임형이다.

나. 일본의 대응사례

일본은 1986. 6. 23 동경소방청에 방화화재예방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방화대책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방화대책위원회는 소방, 경찰,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건축공학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³⁷⁾98년도 방화 화재 발생 건수에 있어서 화재 통계 연보에서는 3,056건이라 하고, 경찰백서에서는 1,145건이(1999. p. 13)발생하였다고 하며, “범죄백서”에서는 1,157건(199. p. 52)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통계자료마다 방화 범죄의 발생건수, 즉 범죄 발생 실태가 불일치하여 혼란이 예측된다.

조사 연구분야는 ① 도시계획, 건축환경면 ② 자주 방화조직, 방화관라조직 ③ 법제, 행정면 ④ 사회심리, 청소년 교육면이다.

방화대책위원회가 실시한 “방화화재 예방에 관한 연구”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방안들을 정책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대부분의 방화화재 예방 정책은 이 연구자료를 참고하였다.

4.2 주민 차원의 자율방법 체제 강화

4.2.1 법적, 제도적 측면의 지원 근거 마련

(1) 자율방법대 운영 재정의 지원

방화 범죄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사회적 관심의 정도는 아직 미미하고, 과학적 연구가 미진함으로 인하여 대책 마련도 기초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범죄예방의 신경향”의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과 지역사회 경찰 및 소방 활동을 활성화하여 범죄나 화재를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통제를 통하여 예방하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주민의 자율적 방법활동 참여를 위한 동기제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행 자율방법대의 활성화라든지 의용소방대 조직의 방법요원화를 위한 재정지원 등 법적 행정적 측면의 개선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이웃감시 프로그램(Neighborhood watch program : NWP)은 1980년대 이후 가장 대중적인 지역사회 범죄예방 프로그램으로 지방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보안관서(Sheriff's department)나 경찰국에서 조직을 관리한다.³⁸⁾

이 조직은 또한 1개월에 1회씩 모임을 갖고 그 동안 각자가 입수한 지역사회 여러 가지 문제와 범인성 요소를 토론하고 이를 종합, 범죄예방 정보화하여 관내 주민에게 범죄예방 지식에 관한 정보로 배포하여 범죄원인을 피해자가 제상의 여지를 없게 하는 등 범죄의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민참여적 범죄예방 분야인 ① 주민신고 조직 ② 자율 방법대 등 주민 조직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시·도 조례 등의 제·개정 등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2) 지역의용 소방대와 자율 방법의 연계활동 강화

지역의용 소방대의 설치근거는 소방법과 시·도 조례로 정하고, 보수, 경비, 보상 등의 재정 지원 근거는 마련 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 액수는 명색에 불과한 극

히 형식적인 것으로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의용 소방대원의 활동이 화재 예방에 대한 한정하지 아니하고 지역 자율방법·방화(防火)등 지역사회 안전관리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여건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3) 지역방위와 민간방법 조직의 교육 훈련 연계운영
향토 예비군의 민방위 업무지원에 관한 규정과 훈련 및 민방위기본법 상의 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역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 훈련시에 범죄예방에 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범죄예방에 관한 관심도를 제고하여 지역방위를 위한 소집, 훈련시에 우범지역 중심으로 배치장소를 선정 배치하고 지역방위 및 범죄예방의 임무를 병행하여 실시가 가능하도록 관계법규의유권적 해석으로 제도화한다면 주민의 자율적 범죄예방 참여의 제기가 될 것이다.

(4) 자율방법대 조직 및 선발의 적정성 유지

현행자율방법대의 조직은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므로 조직구성원의 선발요건이나 소속감이 미흡하여 조직성의 결여라는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런 실태는 조직과 운영을 범죄예방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주민의 자율에 일임하는데서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웃감시 프로그램(미국)을 경찰국 또는 보안관서에 관리하는 것처럼 자율방법대의 조직관리와 유지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관할 경찰관서나 기타 단체가 관리함으로 조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한편 시민순찰대(미국 : Guardian angels)가 유니폼과 베레모를 통일적으로 착용하여 순찰을 하면서 범죄예방과 범죄예방교육 그리고 만취자·노약자보호 등 효과적인 봉사활동을 한다는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자율방법대원에 대한 일정한 복장착용이 가능하도록 지원조치 한다면 자율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뿐더러 대원간의 상호부조 등 친목도모와 결집력의 강화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지역사회의 범죄에 대응력이 강한 비정부 조직간의 연계활동의 필요성이다. 해병전우회나 의용소방대와 같은 자율방법·방재단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방법과 방화순찰활동의 실시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경찰 및 소방)간에 협력하고 이들을 예우하는 관행을 조성하여 봉사자로서 긍지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5) 청소년 범죄예방 프로그램 마련과 방화범죄의 홍보

³⁸⁾최종태, 전제논문, p. 309.

미국의 중·고교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설정한 것처럼 이를 도입하여 범죄예방과 비행 및 학원폭력 등의 폐해를 청소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방화 범죄에 대한 정보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자기 보호의 원칙”을 강조하고 범죄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자기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웃과 공동연대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고 방화 범죄대응을 위한 관심도가 제고될 것이다.

홍보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신문, 잡지, PC통신 등 대중매체와 전단 그리고 지역단위 방송이나 지역신문 등은 좋은 매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3 환경설계를 통한 대응방안

방화 범죄의 원인 있는 사회는 반드시 방화 범죄가 있다고 하는 범죄 사회적 견해처럼 방화 범죄 원인이 되는 요소의 존재는 반드시 범죄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최근의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이 강조되는 것이다.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 환경 계획에 있어 주거단지나 아파트의 건축 구조적 측면이 범죄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건축계획, 설계 시점에서 ① 경비실의 배치 ② 단지 주변의 지형여건에 따른 취약개소에 방범 등 확충 등 외관상의 방범시설 강화와 ③ 주거 단지의 주동을 방범상의 효과를 고려하여 배치함으로써 범인의 접근성을 물리적으로 차단한 다든지 ④ 주변 녹지공간(아파트나 주택 단지와 인접한 임야 등)에 울타리 치기 등 영역성 확보와 경계 시설의 설치, 한편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의 방범기기의 설치유지 및 관리(30대 이상 주차시설은 설치의 무와)를 철저히 하며 범죄의 여지를 없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적 조치에는 행정 지도를 통한 권장 사항으로도 가능하겠지만 법제화하여 주택 단지나 아파트 등 건설시에 건축공학적 범죄예방 기법을 도입하고 또는 범죄예방 기관과 범죄예방상 필요한 사전 협의 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4 방화 범죄의 통제 방안강구

방화 범죄의 통제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4.4.1 방화 범죄의 실태파악 철저

방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는 먼저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방화범죄 통계 자료들은 방화 범죄의 실태파악에 얼마나 정확성을 나

타내는지는 회의적이다. 따라서 우선 정확한 통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통계자료는 방화 취약장소 시간대, 수범과 동기 등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4.4.2 방화 범죄 연구 전담기관의 설치

우리 나라는 아직 방화 범죄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방화 범죄의 발생추세 및 특성 등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방화 범죄에 대한 축적된 지식도 부족하여 적절한 통제 및 예방정책 수립이 곤란하다. 따라서 방화 범죄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화 범죄에 대한 연구를 행할 전담 연구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 참여 할 기관들은 경찰 및 소방 관계자와 보험관계자 그리고 관련 법률 전문가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들이어야 할 것이다.

4.4.3 방화 범죄의 동기제거

방화 범죄를 유발하는 동기를 제거함으로써 방화 화재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보험사취를 위한 방화는 경제적 이익자체가 방화 유발 요인이다.

그러므로 보험금 지급 경우 철저한 화재 원인 조사가 선행되어 헛점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조사에는 경찰과 소방 그리고 화재 전문감식가 등이 함께 실시하는 것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4.4.4 방화 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

방화 화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옛부터 범죄적 동기라기보다는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결함에 대하여 관심을 더 가져왔다. 그래서 방화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을 별로 실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방화는 그 피해의 결과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고 심각하다. 이런 위험성을 사회 공공에 널리 홍보하여 방화 범죄의 경계와 예방에 모두 동반자적 인식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4.4.5 기타 관련 부서 및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

우리 한국은 검찰에 방, 실화 담당 검사가 지정되어 있을 뿐 경찰서 내에 방화사건 전담반이 설치 되지 않아 방화 화재의 전문 수사요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소화작전의 특수성 때문에 현장 보존의 곤란성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화재 원인이 방화인지 실화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장 경험이 많은 소방관의 의견에 방화범의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관은 귀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또한 방화 화재의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소방기관의 진화 활동에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금 사취 목적의 방화라면, 보험회사: 보험 가입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사기관

에 알려야 할 것이다. 이렇듯 수사기관과 기타 방화 관련 기관 및 단체간에 긴밀한 협조 체제의 구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4.5 방화범의 정신분석학적 처방

방화범지는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에 결정적이고도 치명적인 손실을 주는 범죄 행위로서 대량 살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방화 화재에는 그 범인(사람)에 대한 제지로서 예방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사람에 대한 제지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사람(방화범)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자료에 의하여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 처방에는 방화범의 분류를 프로이드가 제시한 성적에너지(성심리학적 발달단계)에 따른 분류에 따라 고안된 치료 방법으로 최근에 와서 시도되는 과학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최근 방화로 인한 화재가 증가하고 있고 방화는 그 피해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위험범죄임에도 일반적인 관심도가 저조하고 방화범죄에 대응하는 방안이 있어서도 과학적인 연구나 조사 없이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방화범죄의 통제를 위한 활용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목적

에서 ① 주민차원의 자율 방법체제의 강화와 ② 공공기관 등에 의한 방화범죄의 통제방안, 그리고 ③ 방화범의 정신분석학적 치료를 위한 처방 등으로 방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찾아내어 제지함으로써 방화 화재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방화범의 정신분석학적 치료를 예방의 한가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방화 화재의 동기가운데 정신이상자나 방화광에 의한 방화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한편, 공공기관에 의한 방화 범죄의 대응 방안으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강조하려는 것은 검찰, 경찰, 소방 등 방화 화재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관리 유지 강화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실화의 경우라면 건축 기술이나 소방 기술적 측면의 발전에 따라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방화는 사람의 고의적인 범죄 행위이므로 기술적인 접근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유관기관간의 철저한 공조를 통한 제지가 필요하며, 정신병질적 방화범피자에 대한 정신 분석적 차원의 처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방화범죄의 전문 연구기관의 조속한 설립·운영과 경찰기관을 중심으로 한 방화범죄인의 필검체제 확립, 그리고 교정차원의 정신병질적 치료 등은 방화 범죄 예방에 시급한 과제들이라 하겠다. 한편으로 방화 관련 정보를 지역사회에 배포하여 주민의 자위적 방법활동의 생활화 정착이 필요하며, 민간경비 역량의 활용 등 민·경친선을 통하여 방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³⁹⁾방화범의 성심리적 발달 단계에 따른 치료책에는 다음의 것들을 들 수 있다.

- ① 구강기 방화범에 대한 치료책은 구강기에 고착되어 있는 어린이를 치료하기 위해 친권자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미국의 한 심리치료사는 구강기 방화범의 특징을 보이는 5살 난 소년의 방화범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어머니에 대한 훈련을 병행시켰는데,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한다.
- ② 항문기 방화범에 대한 치료책은 사회적으로 용납이 가능한 대체적 방법을 습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범파서, 브릭스 및 프레스턴(Bumpass, Brix & Preston)은 “면담 - 그래프(Interview-graphing)” 기법을 개발했는데, 이 기법은 상담 전문가가 방화범과 면담을 하는 도중에 방화범의 감정상태와 행동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 치료법은 방화범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상태를 보면서 감정이 고조될 때마다 방화같은 파괴적 방법 대신에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다른 방법을 통해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③ 남근기 방화범에 대한 치료책은 성 욕구 및 만족방법의 정상화이다. 부르게와 브렛포트(Bourget & Bradford)는 항안드로겐제 및 사이프로테론제 투여 등 약물 요법을 통해 남근기 방화범의 전체적인 성욕 수준을 저하시켰으며 이와 동시에 이성과의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사회적 향상 훈련을 실시한 결과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거두었다.
- ④ 잠복기 방화범에 대한 치료책은 비록 방화가 습관이 되어버렸다 하더라도, 불을 놓고 싶다는 참을 수 없는 충동을 느끼지는 않기 때문에 적절한 행동 교정 프로그램에 의해 아주 손쉽게 방화습관을 치료할 수 있다. 홀란드(Holland), 가스텐스(Carstens), 콜코(Kolko) 등에 의하면 7주간의 프로그램으로 잠복기 방화범이 완전히 치료될 수 있다고 한다. 비행청소년으로서 비행화 된 아이들에게는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 줄 사람과 강한 유대관계를 맺는 프로그램(Big-brother Program)이 효과적이다. 잠복기 방화범들의 대부분이 아버지가 없거나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행동 통제 훈련을 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므로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도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 ⑤ 외음부기 방화범에 대한 치료책은 외음부기 방화범들의 특징은 미성숙한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재예방 및 진압훈련을 시키는 것이다(표창원, (<http://www.safekorea.net/webzine/contents/special/sp01-03-3.html>)에서 인용요약한 것임.).

참고문헌

1. 행정자치부, '98 화재통계연보'(1999).
2. 경찰청, '경찰백서'(1999).
3.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1999).
4. 서울특별시, '도시비교통계'(1996).
5. 법무연수원, '범죄백서'(1999).
6. 경찰대학, '경찰방법론' 경기도 교재편찬위원회(1999).
7. 배종대, '형사정책', 서울, 홍문사(2000).
8. 이상현, '범죄심리학', 서울, 박영사(1999).
9. 최종태, '소방학개론', 서울, 동화기술(1999)
10. 이황우, "미국의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 행정학회보(1996).
11. 이상현, "범죄 가능성의 예칙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1996).
12. 이윤근, "한국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방안".
13. 한국경비학회, "한국경비학회창립 학술세미나"(2000)
14. 정진환, "민간경비와 경찰 연구의 새 방향", 한국경찰학회보(1999).
15. 최종태, "방화범죄의 실태와 그 대책", 한국경호경비학회보(1997).
16. 한국경찰학회, "민간차원의 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2000).
17. 최용렬,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1994).
18. Charles P. Neweth, "Private Security and the Investigative Process", Boston(1998).
19. Peter K. Manning, "The Privatization of Policing", Georgetown University Press Washington, D. C (1999).
20. George B. Vold, "Theoretical Criminology", Oxford University Press(1979).
21. Karchner, Clifford L., "Prevention Arson Epidenuics : The Role of Early warning strategies", Battlle Memorial Institute Law and Justice study center, Washington, D. C.(1983).
22. Pisani, A. L. (1985), "Arson in NewYork, 1984", The Arson Task Force(1984).
23. Rosen baur, D.L., "The Arson Epidemic", NFPA Arson Mini Guide 1.(1981).